

시각예술 기반 정착을 위한 제도, 세제 개선 방안

사회 : 김정현 (공주대 교수, 문화예술위원)

- 발제 1 :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제도 2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2 :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11
강효주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발제 3 :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제도 ?
이병권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 4 : 문화예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
정준모 (한국시각문화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예술 관련 조세지원제도

손 원 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 II. 문화관련 조세지원제도
- III. 일반비영리법인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의 세제 비교
- IV. 정책시사점

I. 서론

-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로 대변되는 비영리분야에서 민간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음.

- 비영리 분야 중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음.
- 2000년 법인형태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공연장이나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공연예술제 상설기구와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모든 법인)중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법인을 전문예술법인이라 함.
 - 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중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라 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4년 세법개정으로 문화예술준비금제도의 도입, 법인의 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확대되었음.

II. 문화 관련 조세지원제도

1. 문화단체에 대한 세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제29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법인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2001. 3. 28. 신설)

□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1) 문예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영화·공연산업, 음반제작 및 게임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 설정시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 준비금은 3년 내에 당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하여야 하며, 3년내 미사용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함.
 - 상기 규정은 영화제작·공연 등 문화산업의 경우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소득을 올린 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신설되었음.
 - 즉,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소득 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하여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200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동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제작·배급업 및 비디오·방송물 제작·배급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7년 사업연도부터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도 이러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됨(상증법시행령 12조 6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됨(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제2항).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법제명을 2006. 3. 개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종래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현실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적용

- 2004년 10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영화산업 및 공연산업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었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 기부자에 대한 세제

□ 기부금의 손금인정

-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됨(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2004년 10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8%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한도가 확대되었음(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 200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만 인정하더라도 한도초과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한도는 2004년 세법개정으로 100%로 손금한도가 확대되었으나 2006년 지출분에 대해서는 75% 2007년 지출분부터는 50%로 손금한도가 다시 축소됨.

Ⅲ. 일반비영리법인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세제 비교

1. 단체에 대한 세제 비교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함(법인세법 제1조 제2호).
-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즉,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100%,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한도로 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함(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 동 규정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수익사업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이에 해당되는 단체 중 문화예술 관련 단체로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경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동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제9호).
 -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문화예술 관련 일반비영리법인이 동일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기부자에 대한 세제비교

-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기부를 받은 단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짐.
 - 법인세법상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중에는 문화예술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손금으로 인정됨(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됨.
 - 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

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3%의 손금 한도를 더 허용하고 있음.

-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부금특례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월결손금 및 전액 손금처리되는 기부금 차감후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 있음.
 -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2004년 10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손금한도가 100%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손금한도가 2006년 지출분에는 75%, 2007년부터는 50%로 축소될 것 예정임.

<표 2> 일반비영리법인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세제 비교

	일반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소득의 5%	- 문화예술단체 ¹⁾ 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소득의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소득의 50%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소득의 100%
상속세 및 증여세	- 과세면제	- 과세면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적용	- 법인: 적용배제

주: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

IV. 정책시사점

□ 지정기부금의 경우 현재 개인소득의 10%, 사업소득의 5%로 소득공제 및 손금인정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한도 폭의 확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 및 손금인정 한도는 개인이나 법인의 연간소득에 대해 10%,

5%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문화예술분야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나 학술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을 총괄하여 연간 총 소득의 10%, 5%를 의미함.

- 2004년 10월 5일 조세특례법 개정에 의해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손금 산입한도를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에서 8%로 상향조정하였음.
 - 다양한 비영리분야 중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다시 5%로 인하하도록 제안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법인보다는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조정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법인 형태를 가진 예술단체에만 해당되어 대다수의 임의단체에게는 기부금품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함.
- 법인과 단체에 대한 제도상의 차이는 조직의 투명성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단체의 경우도 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상 혜택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임.
 -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조 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를 신설한 (2005.1.1 이후) 것도 이러한 취지라 할 수 있음.
- 세제혜택은 기업형태를 갖춘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수예술을 하는 전문예술단체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세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하기보

다 소규모 전문예술단체들의 통합을 통한 법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기부 문화 형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하더라도 기부자(개인·법인)가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지원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따라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2004.
-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2000. 12.
- 영화조세통람, 『2006 조세편람』, 2006.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4. 5. 4.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 발전 방안」, 정책과제 2000-18, 2000.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03.



미술시장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강효주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필립강갤러리 대표)

1990년대초이래 국제적인 미술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88올림픽을 전후한 일시적인 반짝경기를 경험한 이후 지속적인 불황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국제시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부활국면의 기조가 이루어져 미술 품가격지표들이 제법 큰 상승폭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국내미술시장은 세계적 여건과는 달리 아직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암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극히 일시적으로 몇몇 인기작가 작품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고 경매시장에서 일부 젊은 작가의 작품이 고가를 형성하면서 죽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를 갖게도 했으나 이 역시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근년에 들어 많은 화랑들이 문을 닫았다.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새로운 기대 속에 새내기화랑들이 뒤를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짧은 기간도 견디지 못하고 모르는 사이 없어져버린 화랑들이 제법 생기고 있는 것이다. 명멸하는 화랑들을 보며 미술시장의 암울함을 걱정 속에 지켜보게 된다.

미술시장은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이 온다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바램은 해보지만 기대는 쉽지 않을 듯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 미술시장의 불황은 전반적 경제의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일시적 침체현상이 아니라, 우리 미술시장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시장유통구조와 화랑경영의 후진성과

낙후성, 규모의 영세성, 국제화 노력의 절대부족, 정부의 왜곡된 인식, 지원 제도의 미비, 미술기반시설의 미흡, 전문인력의 태부족 등 풀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미술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 정부의 역할

(1) 미술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원제도 강화

예술작품으로서의 존재가치나 문화재적 가치를 간과, 경시하고 경제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춰 미술품을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극히 잘못된 인식과 모든 미술품이 투기의 대상이나 탈세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곱지 못한 시선과 편견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간 미술품에 관한 과세를 호시탐탐 획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애호가들의 미술시장에의 진입을 꺼리게 하였고, 음성적 거래를 유발시켰고, 심지어 시장에서 이탈하게 하는 큰 부작용을 낳았다.

증권시장의 경우, 일부 투기자들이 있더라도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술시장의 육성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미래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미술시장과 담을 쌓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자본시장육성책이나 중소기업육성책 등과 같은 선상에서 미술시장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미술관의 확충

우리나라의 미술관 수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하여 극히 초라하고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공립미술관은 대단위 행정구역에 하나정도로 생색내기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미술관의 숫자도 문제이지만 미술관의 규모나 소장작품의 양적 수준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소장작품의 질적 내용 또한 극히 미흡하다. 미술관 숫자를 포함한 소장품의 양적, 질적 확충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인이나 기업과 더불어 미술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미술관의 확충으로 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미술시장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미술시장발전기금의 조성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대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미리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미리 확보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예산 외에도 메세나기금의 출연, 기업의 출연 등을 유도하면 좋을 것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프로젝트별 매칭펀드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민간의 역할

(1) 화랑의 대형화추진

화랑의 영세성은 경쟁력 면에서(특히 국제적인) 우선 문제가 되고 있고, 건전한 시장발전에도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본력과 인력확보에 열세적인 화랑들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노력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극히 개인적 속성이 두드러진 화랑의 입장에서 합병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점포와 인력을 공유하고 주식회사식 분업경영을 시도하며, 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화랑의 경영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영세성으로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한 화랑전속작가제도도 활성화 될 것이다. 합병화랑에 대하여는 일정기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대형화를 촉진시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기금 등에서 경영합리화자금으로 장기저리대출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2) 기획전문화랑중심의 유통체계 확립

미술작품의 생산자(작가)와 수요자(컬렉터 또는 구매자)를 연결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거래시키며 미술가를 육성하는 유통자로서의 화랑은 미술시장의 중심축에 서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유통경로로 통한 거래가 아닌 작가와 수요자간의 직거래나 건물임차인(소위 대관화랑)을 통한 거래 등으로 건전한 미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꽤 일어나고 있다.

화랑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작가는 수요자가 직접 작품을 사겠다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직거래를 통한 이중가격 발생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미술은행에서도 작가와의 직거래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미술관도 직거래방식은 하지 않아야 한다. 돈 받고 대관하는 화랑(?)에 제대로 된 작가가 전시할 이유가 없다면, 일반인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차별화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화랑에 기획전문화랑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도록 하고 그 외의 화랑은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러한 질서가 지켜지도록 지도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통의 주체인 화랑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전속작가제도도 지켜질 것이며 나아가 미술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3) 화랑과 경매회사간의 관계 재정립

1998년 서울옥션에 이어 2005년 K옥션이 생겨나면서 양대 회사가 최근 치열한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의 경쟁으로 경매회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스컴의 보도가 집중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개 회사의 독점적 시장지배보다는 복수로 회사가 생겨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미술시장의 보완적·2차적 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나간다면 긍정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대 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대주주가 모두 대형화랑의 소유자들로 되어있고 미술시장의 막강한 지배자들이라는 점에서 미술시장의 건전한 구조의 왜곡과 미술품가격의 인위적 조작 등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미술시장전체의 독과점적 지위확보로 여타 화랑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시장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급기야는 많은 화랑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화랑들도 또 다른 경매회사들을 양산해 내는 현상을 빚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된 시장인 프라이머리마켓은 크게 위축되고 2차 시장이 오히려 비대해지는 부작용과 아울러 2차시장이 1차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작가들의 경매시장으로의 직행, 최근작들의 경매, 타 화랑작가의 전시회 전후에 즈음한 작품경매시도, 타 화랑전속작가 작품값 깎아내리기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태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경매회사들의 그러하다는 것보다는 새로 출현하는 경매회사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화랑과 경매회사 양진영에서 자율적인 영토구획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차시장이 위축되면 보완시장 역시 부메랑으로 결국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화랑과 경매회사의 겸업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짚어보고 서로 공생하는 지혜를 함께 짜낼 필요가 있다.

(4) 미술시장의 국제화 추진

우리의 미술계 상황을 ‘우물 안 개구리’로 표현하고들 한다. 백남준의 타계 이후 세계적인 작가가 없는 듯 보이고, 미술품가격도 국제적인 거래가격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외국작가의 전시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국내 작가의 외국전시는 별로 눈에 띄지를 않는다. 국제적인 아트페어에 진출이 크게 미흡하고,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도 아직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도 국제화는 크게 뒤져 있는 처지에 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다. 모든 시장이 다 오픈되어 있고 무한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미술시장도 이들과 대결을 회피하면서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인식하고 쇠국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우물 안의 올챙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여 미술시장의 판을 넓혀야 한다. 화랑의 경영자들 스스로 인식개조와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확보로 미술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해외아트페어 참가 등 국제화에 힘쓰는 화랑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무료교육·출판을 통한 미술의 대중화 도모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컬렉터는 국내에 불과 수십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미술품 수요층은 극히 얇다. 물론 전문적인 컬렉터가 아닌 일반 수요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의 수가 전국적으로 2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될 때 작고작가를 제외하고도 생산자와 수요자의 극심한 편차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시장상황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같이 좁은 시장과 연간 2천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미술시장 규모(화랑, 미술관, 경매회사, 아트페어, 건축물미술장식품등의 합

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은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미술강좌를 무료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미술의 이해와 미술품구입지침이 되는 책자를 출판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해볼직하다. 강좌를 행하는 전문강사의 강사료나 책자출판비는 정부의 기금에서 보조금으로 타내거나, 화랑협회의 예산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시도로 그간 전시위주의 유인책에 머물렀던 것에 나아가 ‘찾아가는 교육’, ‘쉽게 보는 출판물’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좁은 시장의 확대를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미술시장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이제까지도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다. 위에 제시한 방안들을 추가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고,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 실시하면 보다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6 제3차 시각예술 정책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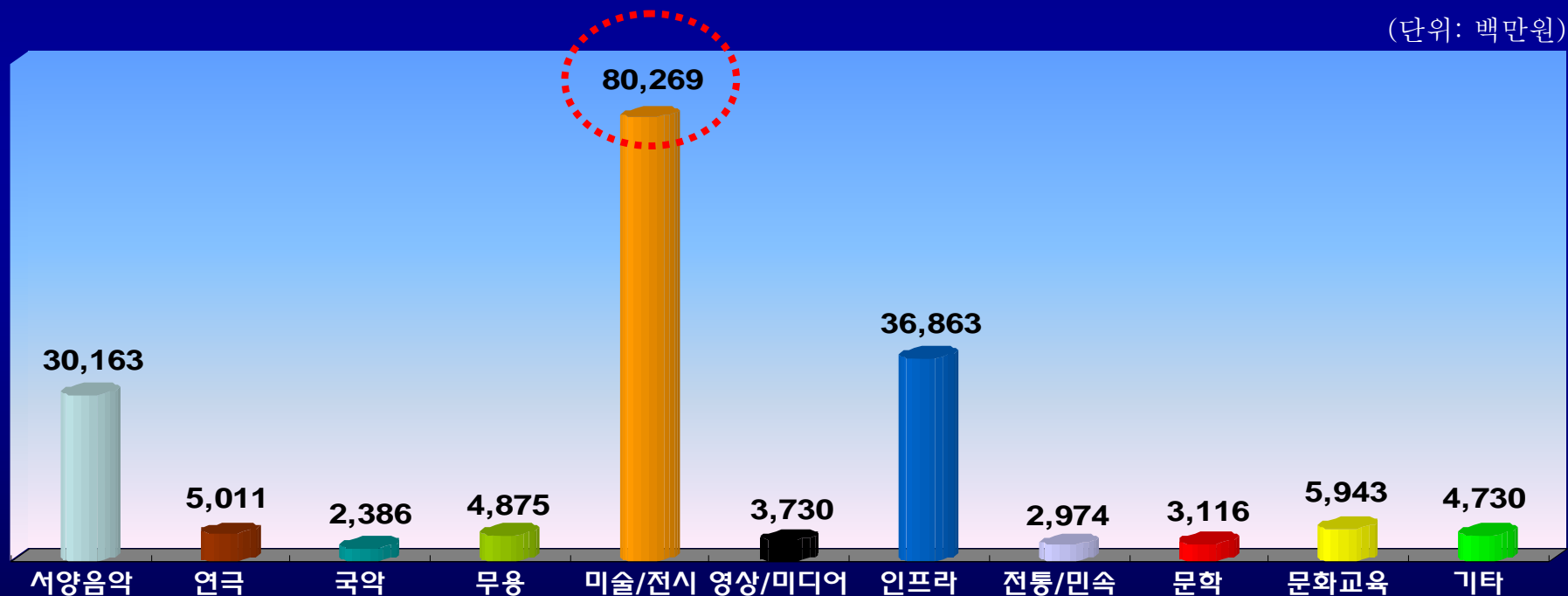
기업 메세나, 문화투자로 이르기 위한 길

2006. 9. 1

한국메세나협의회

2005년 기업의 시각예술 지원 규모 : 802억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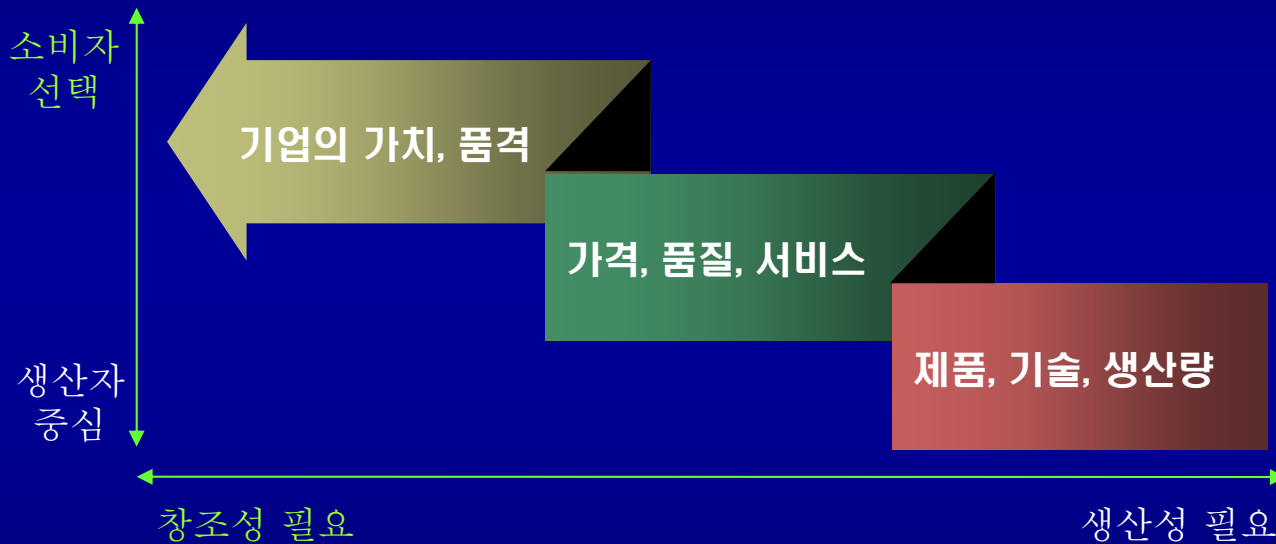
- 문화예술 지원 총액(1,800억원)중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르 중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 지원 활동 유형 : 문화재단의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소장품 Collection, 대회 개최 및 유망 작가 지원 및 연수, 비주류 작가 작품 매입, 현물 지원(도록 무료 인쇄 및 홍보 지원), 비영리 전시관 현금 지원 등



* 2006년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원사 및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조사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기부금 포함)

기업의 생존 부등식 : $V > P > C$
 가치 > 가격 > 원가

21C 문화기반경제 시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기업의 “가치”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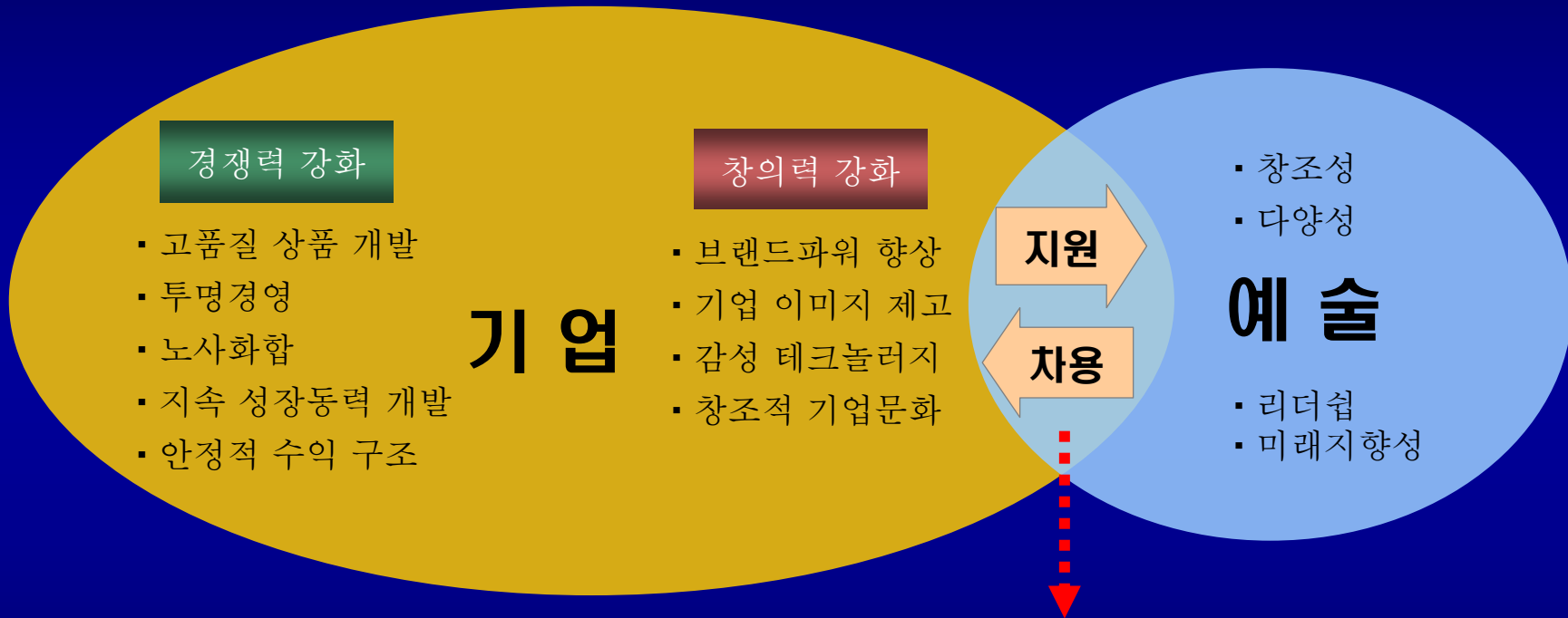


Q 무엇을 만들면 잘 팔릴 것인가?
 →기업의 가치(V)를 만들면 잘 팔린다

Q 어떻게 가치를 만들 것인가?
 →문화적 책임 투자로써 소비자의 감성적 기호를 만족시킨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속하며, 이는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 이외에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Value)를 창출하는 핵심 경영활동이다

예술 지원과 Value 창출의 상관관계



“ 주어라! (Give), 그러면 받을 것이다 (and Take) “
 보편적 휴머니티에 기반한 **창의성**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증진

가치를 통한 차별화 = 마케팅 최고의 善

시각예술의 가치

- 소장 가치
 - 일회성의 공연예술과 차별화
 -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
- 뛰어난 홍보 효과
 - 유명한 작품 보유할 경우 글로벌 홍보 효과 창출 (고흐 해바라기, 백남준 작품)
 - 피카소전 : 유료관객만 24만명
- 정확한 소유 관계
 - 매매가 가능한 특성

가치 결합

기업의 NEEDS

- 브랜드 파워 강화
 - 고급화 또는 트렌디한 이미지 강화
- 탁월한 홍보 효과
 - 지원 대비 多 고객 노출 효과
- 기업의 자산 증식
 - 하나은행 : 이응노, 백남준 작품 20년간 2~5배 가격 상승
- 창조적 기업 문화
 - 직원들의 자부심 향상
 -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 가능

사회공헌에서 실물투자까지 ...

● 기업의 시민의식 CSR 관점

- ▶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돌려주다 → 기업의 이윤 사회환원, 시각예술 향유 기회제공
- ▶ 인재 발굴 및 양성, 비영리 대관, 직접적인 현물 지원 등 시각예술가 지원

● 마케팅의 블루오션 프리미엄 미술 마케팅 관점

- ▶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서 비전 제시 → 유명 미술인과 합작 브랜드 출시
- ▶ 미술과 타 장르가 결합된 고품격 행사 개최 → VIP 고객 초청
- ▶ 갤러리의 고급 이미지를 차용한 브랜드 체험 공간 마련 → 고객 만족도, 충성도 증대

● 미술품 투자 수익률 10.5% 실물투자 관점

- ▶ 2004년 한국미술시장의 미술품 투자 수익률 10.5% → 금융, 부동산과 같은 실물 투자 대상으로 인식 전환
- ▶ 미술품 양도세 폐지, 업무용 자산 인정 → 실질적인 세금 혜택





인프라 건립 / 예술인 지원



- 지원기업의 80% 이상
- 개인소장품 기증
- 미술관, 박물관 건립
- 비영리 대관
- 예술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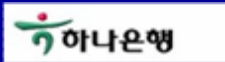
브랜드 홍보



- 브랜드명 인프라
- 브랜드 체험 공간 마련
- 주요 고객층을 위한 전시
- 유명 예술가와 합작

사회공헌

마케팅



미술품 구입



- 유명(수익성) 작품 구입
- CEO 의지로 시작하여 전략적인 정책으로 구체화

문화투자

직원교육

직원 중심



- 사내 미술작품 전시
- 로비 전시회, 사내 전시회
- 직원 창의성 증진 목적
- 전시회 직원 관람 장려

● Value & Vision & Visual

- 상품→이미지→가치로의 이동. 기술의 시대가 가고 감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의 시대가 도래
 -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와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 →미래지향적인 예술의 비전을 차용
 - 디자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시각예술의 비주얼 특성이 강조
- ☞ 기업은 21C 새로운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시각예술과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 확대 전망

● ISO 26000 도입에 대비

- ISO 26000 :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에 관한 국제 표준안
 - 기업 해당 ISO 26000은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 강조
 - 메세나協 ISO26000차원의 ‘문화기업 인증제’ 추진 중
- ☞ CSR 활동에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됨

● 기업과 예술의 만남 (A&B사업)

- 시각예술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선 기업 자체 기획 행사 보다 지원, 양성 프로그램 필요
 - 기업과 시각예술인/단체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적극 유도 필요
- ☞ 메세나협의회는 A&B사업을 통해 시각예술에 대한 기업의 직접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시장질서 부재

- 유통, 가격 책정, 판매의 합리적 시스템 부재 → 기업 예산 책정과 결산 과정에서 문제발생
 - 불투명한 시장 환경 → 참여 기업의 이미지 동반 하락 우려
- ☞ 옥션과 갤러리, 작가 개인 등 판매 과정, 시스템 정립을 통한 미술시장 이미지 제고 필요

● 시장 정보 및 전문가 부족

- 작품과 작가, 가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부재 → 정보획득의 어려움
- 작품 선정, 구매, 관리를 총괄, 대행하는 전문가 부족

☞ 오프라인 이외에도 우리나라 미술 정보를 집약한 공신력 있는 온라인 정보망(미술포탈 사이트) 구축 필요

☞ 기업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미술 시장 전문가 양성

● 기업의 미술투자에 대한 오해

- 기업은 문화투자적 관점에서 미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상업 목적의 영리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임
-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소장품은 사회적 자산으로써 일반 대중과 미술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가치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기업의 미술 인프라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기타 문제점 및 제언

- 세제혜택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도움 필요
- 이벤트성 전시회로 인해 비영리 목적의 기업 전시회 소외
- 기업 운영 인프라는 기획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좋은 전시 기획의 어려움
- 기업의 시각예술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 이병권

URL		www.mecenat.or.kr
E-mail		bklee@mecenat.or.kr
Tel		02-761-3101

문화예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정준모(미술행정, 한국시각문화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산층 이하라고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생계형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평생을 한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온 원로 예술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연금수준의 생계지원과 문화예술계의 원로로서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생계 대책형 복지제도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복지제도를 요구하는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고 폭 또한 넓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되고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루어진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라는 것이 그 성격이 모호 할 뿐 만 아니라 대상 또한 불분명하여 복지제도라는 이름을 빌린 일방적 지원제도 또는 시혜성격의 지원제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이를 요구하는 문화예술계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방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보호육성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정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집단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벌어진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제 절대적 박탈감에 이르는 사회계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정부의 힘으로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원의 조달과 그 운용 및 관리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문제 등이 현재의 문화예술계의 행정적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화후원 또는 문화지원을 위한 재원의 분배나 자리의 분배가 정치적 패권

에 따라 지원되거나 또는 지원된다고 믿는 불신풜조 또는 불신을 야기하는 행태들은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임에 분명하여 국민적 합의와 재원조달이 이루어 진다해도 그 실현까지는 매우 지난한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노후 또는 소득을 잃었을 때 즉 실업의 상태 일 때 그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창작활동을 위한 재료와 장소 그리고 도록이나 창작집의 발간 등 창작활동 전반에 걸친 창작여건의 개선과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한 차원의 복지제도 마련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단지 복지제도라는 단어가 갖는 기대치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언제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복지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복지제공 후 수혜자의 의무와 책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제도 전반과 문화예술인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한 연후에 실질적으로 사회 보험적 성격의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시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복지제도 이전에 민주국가에서 복지제도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제도 중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복지제도 중 어떤 형태를 택할 지에 대해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후 어떤 방식이 현실적이며 진정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제도가 될 지에 대한 수렴절차부터 거쳐 확정시키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즉 국민연금이나 보험 제도를 통한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시행을 현행 국민연금에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특별한 별도의 보험 제도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고 이의 실현을 통해 준비를 하여 국민일반과 대정부 부를 설득하는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복지제도란

가. 복지제도의 역사와 의미

복지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다름이 아니다. 사회보장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고 시행한 1935년부터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즉 20세기 초반에서야 현실화한 국가가 행해야 할 국민을 위한 의무가 되었고 이의 양적 질적 수행의 여부가 복지국가, 선진국가라는 인식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삶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상이한 조건과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즉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질서의 모순을 시정하여 경제적 강자들의 일정이상의 소득을 거두어들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최저생활보장(security of income up to a minimum)을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같은 법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요하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재정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실시해 왔다.

시행 초기에는 단편적이고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사회보장법의 일반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

는 새로운 법에 대한 제정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종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 실질적인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제정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사회보장기본법을 평가함에 있어 이 법이 ‘기본법’으로의 기능, 즉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비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떠한 법의 제정이 실질적 의의를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법이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그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체제는 보험, 부양,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그 수단으로 갖는다. 보험이란 예를 들어 질병, 노동 불능, 실업 등과 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위험들로부터 대처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냄으로써 개인적으로 부양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 또는 수혜자가 일정이상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기타 기관이나 소속기업으로부터 일정부분 또는 관리운영경비를 제공하며 기금의 운용이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부양원리는 보훈연금처럼 애국지사, 전,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일상의 근무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손실이나 위험을 보상받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전쟁 피해자의 부양이나 공무원의 노후부양도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원리는 보험제도나 부양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제도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던 자영업업을 하던 그리고 나머지 어떤 일에 종사하던 충분하지는 않지만 4대 보험 즉 건강 및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어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의 경우 일반적인 4대 보험과 중복될 분 만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도입은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와 대 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된 이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결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왔다. 그리고 예술시장이 순기능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또는 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여 그로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은 이미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예술가는 사회생활, 사회진보, 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사회보장과 보험규정으로부터 적절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를 연구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복지제도의 종류

일단 문화예술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국민보다 그 보호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또는 복지제도로서의 일반적인 유형과 방법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제도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험과 사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비영리 즉, 공익을 추구하지만 사 보험은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둘째 사회보험은 헌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며 사 보험은 기업이 주체가 된다. 세 번째로는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의무가입이 전제되지만 사 보험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일반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시행되며, 보험형식을 빌려 자신의 소득 일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여 문제발생시 혹은 수급요건에 맞을 때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서 탈락하거나 사회보험으로도 인간다운 생활 즉, 최저생계에 미달할 경우를 위해 일정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원조하는 것으로 보통으로 역사상으로 보면 구빈제도(poor relief)가 그 근원이 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설 보험사 그리고 사설복지사업단체이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 제도에는 국민 모두가 조합원으로 대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대개 선진적인 복지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 안정망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보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고보험 및 취업촉진교육, 가족수당, 생활보호, 주거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추가로 사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수 백 만원, 수 억 원에 달하는 책임보험에서부터 단 며칠간의 만 유효한 여행자 보험 등 각양각색의 보험이 있다. 이와 함께 사설 복지사업은 교회, 종교단체 혹은 사설 단체들이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다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사업단체들의 주요 자금원은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으로 받는 기부금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 시행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보차원에서 검토 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이외에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형편과 국민일반의 감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기업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전은 물론 작품이나 창작물 공연권이나 저작권, 출연료 등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일정부분의 보험료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재원을 조달해서 보험사는 직간접적으로 문화활동 또는 문화산업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양질의 공연이나 전시, 음반의 출시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 제도를 창안하거나 문화예술인들은 재능 즉 예술가로서의 창조성을 제공하고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형태의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문화예술인들 중 복지에 관심 있는 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협동조합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정부나 사회구성원들의 지원이나 출자는 문화예술인들의 부족한 가계 수익구조상 필수적이다.

표1 사회 안정망의 형태로 본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비교

종류	장점	단점	비고
사회보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운용 용이, 가입자 부담최소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필요하여 국민일반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연금의 통합분위기에 반함 국민 연금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	국가 지원형
사보험	주체가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이익과 맞으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가입자 부담가중	기업의 이익 창출 면에서 문화인 복지와는 동떨어진 목적왜곡의 사업추진 가능성	사기업의 출자와 문화예술인의 가입형태
협동조합 또는 금고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율성 극대화, 정부와 런칭펀드개념으로 재원조달 용이 가입자의 무한책임 설립시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도	재원의 확보와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 상존 운용상 적자발생시 조합원 보장불가	자립형

3. 외국의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외국의 선진국가의 경우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거나 시행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안전망은 그 역사가 깊고 나름의 재정적 구조가 튼실하여 국민일반 모두에게 골고루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물론 독일과 프랑스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고 사회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 중에서도 스웨덴의 경우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조건에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직종에 따라 사회복지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복지조직이 없는 일본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다른 한편의 이유는 문화예술인들의 부 정기적인 수입과 정년의 불확실성, 실업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인 ‘기여 없이는 혜택 없다.’라는 원칙을 토대로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모호하고 또 연금 등을 지급하는 시기와 액수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내기 어려운 것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예술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향후에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한 제도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국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의 경우도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연기금의 고갈을 재촉하고 있어 일어나는 재정의 압박도 현실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가. 독일

독일의 경우는 비교적 사회적 보험제도가 가장 훌륭한 나라로 일컬어진다. 물론 통일되고 난후 재정적 압박으로 그 연기금의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북유럽과 함께 복지제공이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는 1983년부터 예술인과 자유기고가를 대상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법’이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의 기본은 의료 즉 질병에 대한 치료와 은퇴 후의 연금지급, 그리고 간병 등 세 가지에 국한하고 있다. 즉 실업이나 가족의 부양, 교육, 산업재해 등등의 일반적인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경우보다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순수 예술인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후 가입된다. 이는 철저하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예술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재직기간과 수입이 중요한 가입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일단 이러한 예술인 및 자유기고가와 언론인 중 예술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2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수한 개별 창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나 취미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처음으로 직업 예술 활동을 시작하여 수입이 가입자격의 최소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예술인 사회보험청의 심사를 받아 5년간 보험가입을 보장받는다. 물론 5년 후 가입자격의 최소한을 금전적으로 기여 할 수 없는 소득을 올릴 경우 자동적으로 퇴출되게 되는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 보험자인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반은 정부와 문화예술관련 기업 즉 출판사, 화랑, 음반회사, 방송국, 공연기획사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급여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같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로 가장 우호적인 제도이다.

나.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과 유사하게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는 예술인들의 종사 지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저작권료를 받은 예술인 대상 보험제도로 개별 창작인의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다른 하나는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다.

두 가지 사회보험제도 중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 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이를 토대로 추후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저작권료가 주 수입원이 되는 문화예술인 즉 문학과 음악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질병과 모성, 미망인 연금, 일반사회보험료, 사회보험부채반납금, 부가노령연금이 포함된다. 본인부담액은 저작권료의 0.5%~6.55%이며, 사업주 부담액은 1%~3.3%정도 이다.

임금을 받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는 사회보장 및 국민연금연맹에서 관리하는 보험제도다.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며, 본인부담액은 임금의 0.5%~6.55%, 사업주 부담액은 임금의 0.0%~18.8%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앵떼르미탕’이라는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보험 중 실업보험의 경우 수혜의 조건을 공연이 없는 동안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는 문화예술계 비정규직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을 받을 수 있는 조건보다 약화시켜 일반 노동자들이 연간 606시간을 노동하면 매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공연 예술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07시간을 노동하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일반직 실업수당이 하루 평균 45유로(약 5만9000원)인 반면, 문화 예술 분야 실업수당은 하루 평균 122.55유로(약 16만원)에 달한다.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예술인 1,947명 가운데 30.9%가 창작활동과 관련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월수입 20 만 원 이하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문화예술인들이 극빈자 수준의 생활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 급여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보는 것도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등과 같이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세금 공제액 좀 더 유동적으로 상향 조정 해 준다든가 또는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마련을 위한 전제

우선 한국에서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마련을 위한 전제조건은 매우 많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제안이나 제도의 시행은 요원 한 것이 되고 말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 구상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감성적 호소와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 들을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란 ‘기여와 혜택’이 비례하는 것이 사회 안정망의 기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지원과 혜택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국민일반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와 전통에 알맞은 것인 동시에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국가 또는 국민이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를 요구하는 이들 개개인의 창의성과 소질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혜자들의 기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사회보험의 성격상종래와 같은 보험료와 급여간의 보험 수리적 관련, 즉 수지상등의 원칙 즉 보험료 납입총액=지급하는 보험금+경비의 총액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다. 따라서 기여는 적고 수혜는 일반 사회보험과 같거나 더 많다면 일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탓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출발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예술계의 중지를 보아 자기 분담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율과 문화예술관련 산업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문화예술인을 비정규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생산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산업 부문에서의 기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출판사, 음반 제작사, 화랑, 공연기획 또는 제작사, 극장 등등에서도 연기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선호하나 이는 당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계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지급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출범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 보험의 형태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현실적 일 것으로 보인다.

즉 전시나 공연의 경우 일정 금액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다시 이를 운용하여 다음 공연이나 전시 시까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물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뮤지컬이나 영화, 음반 등 공연 분야에서는 일견 어느 정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의 형태로 스스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표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물론 이는 가입자에 한해서 그 혜택이 주어지지만 독일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처럼 문화예술계에 입문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가입의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 미 가입 은퇴 문화예술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기금의 일부를 할당함으로써 사회적, 국가적 보조를 받아내는 명분을 확보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 공무원들이 주 구성원이 되는 사단법인 형태의 상조회의 경우를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수주하거나 대행해서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작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문화 창달과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 살아온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조합은 벌써 시작되어 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할 시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도 변변하게 없이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복지제도 마련에 관심이 없거나 남이 특히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줄때 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수동적인 자세의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마. 한편 시장의 인정을 무시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태도는 일견 이해가 가고 수긍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국가 보호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라는 태도는 국민일반을 설득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학력이 높다는 점은 경제적 약자의 길을 문화예술에의 종사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편으로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누구까지를 문화예술인으로 한정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취미와 오락으로서의 문화예술인과 순수한 예술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유네스코가 정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 할 것인가도 큰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극장의 무대조명을 맡은 전기기술자의 경우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이러한 복지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려고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시장에서 우선 인정을 받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스스로의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만일 문화예술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가 시행된다면 다른 직업군이나 사회계층에서도 같은 요구가 빈발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반해 그에 반비례하는 참여도를 가지고는 복지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구두선에 불과하다.

5. 결론을 대신해서- 복지제도의 몇 가지 대안

소극적이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에 비해 낮은 참여도등을 통해 볼 때 국가주도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 복지제도에 가까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면

가.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상정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초경비를 일정금액이상을 책정하여 공제토록 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세금경감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자산이 소모된다는 점과 뼈를 깎는 창작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금전적으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방안이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각종 경연이나 공모를 통해 상금을 수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일정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 중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항을 삽입 개정하여 일반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준보다 좀 더 완화된 자격 요건을 규정해서 이들에게는 국가재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

이다.

나.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예술원법’을 개정하여 그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원로나 은퇴한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이상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별로 지방자치제 단위의 예술원을 설립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계의 원로들 중 일정 수입에 미달하여 노후가 불안한 문화 예술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에 고문이나 명예관장 또는 극장장 제도를 두어 원로 문화예술인들을 임명하여 소정의 급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끼리끼리 문화가 횡행하고 소위 코드인사라는 문화 예술적이지 못한 행태가 지적되는 한 그 보편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보호세력의 각축장이 되거나 문화예술계의 패권주의 성과물로 전락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과 문화예술계의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상조란 생각에서 문화예술인 복지라는 주제에 충실하고자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는 것이다.

다. 현행 국민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의 보완

지난해 말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에서 ‘제주예술인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발표한 김석범은 자신의 논문에서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1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보장 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는 남성 61명, 여성 39명이었고 40대 40명, 30대 35명, 50대 이상 14명, 20대 11명이었으며 분야별로는 문학 17, 미술·사진 41, 음악·국악 26, 무용·연극 16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이 5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은 전체 응답자의 75%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건강보험은 1백% 가입했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연금 6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 3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5%를 나타냈다.

취업상태는 유급직장인이 61%를 차지했고 전업예술인 24%, 자영업 15%였다. 위의 김석범의 자료는 제주도에 국한된 자료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등소이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은 100%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연체율은 조사결과가 없지만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국민의 65%가 가입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정부당국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문화예술인들의 직업특성상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의 형태가 많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평균이하의 아니다. 그러나 순수 문화 예술 활동에서 수입을 얻기보다는 일반적인 직장에서 수입을 대부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창작활동에 전념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4대 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에 기여도를 경감시켜 줌으로서 그들 수입의 일부를 창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자기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경감해 줌으로서 국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물론 김석범도 그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예술인을 위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복지제도의 시행에 앞서 모든 경우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 월평균 소득의 산출, 재산상태, 교육정도, 문화예술시장의 인정도 그리고 다른 계층이나 직업군의 동일한 요구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확보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복지조합 또는 재단의 결성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사회보험에 포함시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우선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국고보조의 문제이다. 물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령화등의 제 사회적 요건과 복지를 요구하는 계층의 확대로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마당에 새롭게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은 필요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단정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이 비현실적이라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형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인 공제회나 홍익회등과 같이 같은 직능에 종사했던 이들끼리 서로가 각출하여 ‘문화예술인 공제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기금은 조합원 즉 문화예술인과의 사업주에 다름 아닌 문화산업체가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일정기간 국고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기여와 혜택’이라는 점에도 합리적일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 일 것이다.

그리고 향후 현행 문화예술진흥 기금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혜택을 늘여감으로서 삶의 무게를 덜어준다면 실질적이지만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 그 효과도 현재보다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현행 ‘문화예술위원회’가 단순하게 재정을 분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인 공제조합 운용위원회’로 거듭나 경영자적 마인드를 갖추고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운용하며 그 수익으로 복지와 창작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일방적인 시혜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다소 거친 이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길인성 저,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정갑영외 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김만두 외 저,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2001
원석조 저,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1
신섭중 저, 『사회보장 정책론』, 대학출판사, 1998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홍금자 외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00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

1980년 10월 27일

제 2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 21차 유네스코총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 1조에 의거 동 기구의 목적이 유엔 헌장이 세계의 여러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여러 제 국민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임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 인용된 제 22, 23, 24., 25, 27 및 28조를 상기하고,

유엔 경제, 사회, 문화권에 관한 국제규약,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 인용된 제 6조와 제 15조, 그리고 이들 권리들의 충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존, 발전, 보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제 14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 인용된 제 3조와 제 4조, 그리고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상기하고,

예술을 가장 완벽하고도 광범하게 정의할 경우 그것은 생활의 필요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또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정부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조장시켜 주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적 재능의 표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물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예술가는 위에서 언급한 선언, 협약 및 권고 등과 같은 기본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과 보험 규정으로부터 적절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술가는 사회생활과 사회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게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고 또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과 표현의 자유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은 예술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전 세계의 사회적 진보를 고려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술가가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서 고려되고 따라서 그의 예술가적 직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지위에 관계되는 일체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예술가들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고용 예술가이든 자영 예술가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보장, 노동 및 세계상의 여건들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바 있는 문화적 주체성의 보존과 촉진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예술의 실천을 영속화하고 민속을 연출하는 예술가들의 이 분야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예술의 정력과 활력은 특히 예술가의 개별적, 집단적 복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동자 일반 및 예술가의 권리를 인정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제 협약과 제 권고를 상기하고,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가운데는, 예술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심지어는 예술 활동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예술가 혹은 특정 부류의 예술가를 제외하는 것이 있다는 점, 따라서 이들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여타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더 나아가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술가의 지위를 인정한 다해서 이것이 그의 창작, 표현, 전달의 자유를 위태롭게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오히려 그 반대로 그의 위엄과 고결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다수 회원국에서의 예술가들의 상황은 특히 인권,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그들의 고용조건과 관련해서 불안한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여 재능을 개발하고 꽃피우는 데 필요한 여건과 지역사회들과 국가들의 문화정책 및 문화발전 활동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생활의 질의 향상에 예술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적절한 여건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공당국의 행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모든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가진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예술가들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집단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방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직업적 부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직업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예술의 발전, 예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술교육의 장려는 대부분 예술가의 창작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예술 활동의 복잡한 성격과 그것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인식하고, 그리고 특히 예술가의 생활조건과 재능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들의 작품, 혹은 연주, 혹은 그것들에 의한 이용에 대한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그러한 보호를 확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예술가와 국민 일반 양자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효과적인 활동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현대의 예술적 표현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장소는 관련 예술가의 견해를 참작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공공장소를 위한 미학적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가, 청부업자 및 예술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공공장소는 의사소통 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공중과 그 환경과의 새롭고도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예술가들의 재능개발이 기대되는 예술가의 환경은 국가에 따라, 또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하고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당해 사회가 부여하는 의미도 다양해진다는 점을 참작하고,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지위와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또한 만약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여 본 권고 가 의도하는 바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의지와 영감이 요청된다는 점을 확신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문학적 예술적 자산에 관계되는 현행 국제협약의 조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베른협약, '연주가의 권리의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 문화정책에 관한 유네스코의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들, 그리고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협약과 권고들의 조항들을 주목하고,

총회 의제 31로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제안이 상정한 바,

제 20차 총회에서 이 문제가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1980년 10월 27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각각 저마다의 헌법상의 관례 및 고려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면서 본 권고에서 명시된 원리와 기준들을 당해 각 국의 관할영역 내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조항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연방제국가나 비 단일적인 헌법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위하여 본 권고의 조항 중 입법 조치를 취하는데 연방의 헌법체제에 구속당하지 않는 개별적인 성이나 주, 혹은 기타 영토적, 정치적 하부 단위의 법적 관할 하에서 이행되는 조항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그러한 개별성이나 주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기의 조항들을 알리고 이의 적용을 권장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예술가의 지위 향상과 문화생활 및 문화발전에 대한 예술가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기여하는 위치에 있는 당국, 기관 및 단체에 본 권고를 주지시키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의 실시를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한 기간 내에 총회가 결정한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I. 정 의

본 권고의 목적상:

1. '예술가'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성을 기초로 위에서 정의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존중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제 권리를 포함하여,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II. 적용범위

본 권고는 위의 I의 1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되며 그러한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의 분야나 형식에는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 특히 여기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의 적용을 받는 연주가와 번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저작권협약'과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창조적인 예술가와 저자들이 포함된다.

III. 총 칙

1. 예술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표현과 의사전달의 보편적 형식을 구성하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공통분모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에의 소속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원국은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가 전반적으로 예술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회원국은 문화 발전과 문화적 목적의 여가 선용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된 모든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에 특히 매스 미디어와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국은 개인의 생활과 발전 및 사회에 미치는 예술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정, 그에 따라 예술가와 그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 방위, 조력해 줄 의무를 갖는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예술활동과 재능의 만개를 자극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보다 많은 자유 - 이 자유가 없이는 예술가는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없는 - 를 확보해 주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제반 조치들을 채택해야 하고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그들 활동의 결실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모두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예술가들에게 생활의 질에 관계되는 결정에 참여할 기회와 확대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은 임의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도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와 정신적인 풍요가 있는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데 예술활동이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4.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입법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 노동조합과 직업단체를 선택, 결성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또한 예술가를 대표하는 조직체들이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포함한 문화정책과 고용정책의 형성 및 예술가의 작업 여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5. 국가계획 일반과 특히 문화분야 계획의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회원국은 문화, 교육, 고용 등에 관한 제 정책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예술가를 위한 보조와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일반 여론도 그러한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은 예술적 의식의 장려를 적절히 강조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인의 능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 재판매권 - 만약 이 권리가 저작권의 일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 을 포함한 저작권법과 이와 관련되는 인

접법안 하에서 예술가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이 예술가들은 정당한 여건을 향유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직업은 당연히 받아야 할 바 공중의 고려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들의 작업 및 고용 조건을 오로지 예술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6.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모든 예술 활동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회원국은 이 점과 관련하여 국제 및 국내 인권관계 법규에 의해 규정된 보호를 예술가가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 각 국가의 문화적, 전반적 발전에서의 예술 활동과 창작의 역할에 비추어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개별적이든 혹은 협회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와 세계의 전반적인 진보에 기여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적, 국가적, 문화정책의 형성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8. 회원국은 모든 개인이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여타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출생성분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예술적 재능의 완전한 개발과 실천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 발전시킬 기회와 고용의 기회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 같은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IV. 예술가의 사명과 훈련

1. 회원국은 학교에서 그리고 일찍부터 예술적 창조와 예술가적 사명의 발견과 계발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시켜 주기 쉬운 모든 수단들을 증진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효과를 보려면 예술적 창조성의 자극은 빼어난 작품을 생산하는 재능에 대한 필요한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회원국은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의 계발에 적절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을 훈련시켜 모든 형식의 예술적 표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 회원국은 언제든지 가능한 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예술적 분야의 가르침을 제도화하거나 계발해야 한다;

(라) 회원국은 장학 시행이나 유학 지원 같은 자극책을 통하여,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분야나 기타 관련 특수 분야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자극하게 될 접촉 관계를 확립하고, 또한 훈련을 받아 여타 분야의 예술에도 접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고 필요하다면 현존하는 시설들을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 회원국은 상호 협조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안내와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발

전시시켜야하며 예술가의 특수한 고용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그들이 다른 활동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바) 회원국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유산의 복구와 보존과 사용에 있어서 예술가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며,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예술적 전문기술을 후세에 전달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사) 회원국은 지식의 전수 특히 여러 사회의 비결 전수의 전통적 방법에 대한 예술적, 기술적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회원국은 예술교육은 생활예술의 실천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교육은 문화시설들, 즉 극장, 미술 스튜디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기관 등이 이러한 유형의 교육과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 회원국은 여성의 창작성 계발 및 여러 예술 활동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장려해 주는 집단이나 조직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 회원국은 예술적인 생활과 예술 활동이 국제적 차원을 띄고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들, 특히 그 중에서도 여행과 연구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와 활발한 그리고 광범위한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카) 회원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조장하고 예술가들이 임의로 선택한 나라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한편, 특정 국가의 예술가들의 자생적 재능의 발전과 작업 및 고용 조건에 편견을 두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 회원국은 전통적인 예술가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그들의 국내외 여행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지역적 전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 가능한 한 그리고 예술가와 교육자 양자의 자유와 자율에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회원국은 주도적으로 예술가들이 훈련기간 중 전통적인 민속문화를 포함한 자기 지역사회의 문화적 주체성을 자각하게 하여 그 동질성과 그들 문화의 확인이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V. 사회적 지위

회원국은 기술혁신 연구활동을 포함한 예술적 활동을 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 간주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활동의 완전한 개발에 필요한 존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국은 예술가들에게 그들 각각의 문화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그들이 공공적인 인정을 받도록 해주어야 하며, 아직 그러한 체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의도하는 바가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예를 부여

해 주는 조직체를 설립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예술가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술가는 고용, 생활, 작업 조건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입법에 의해 예술가와 비견되는 활동적인 인구집단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자영적인 예술가도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회원국은 현존하는 협약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의 적용을 받는 예술가의 제 권리의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아직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분야와 그 범위 및 그들 문서의 효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회원국은 예술가 노조와 직업적 조직에게는 그들 회원의 이익을 대변, 방어하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조직체에게 행정 당국에 조언할 기회를 줌으로써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 보호와 발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행정 당국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여건;

직업 및 노동조합 조직

1.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식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이 요망되는 바이다:

(가)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경력을 시작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의 예술에 대해 전념하기로 시도하는 입문시기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제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분야에 고용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는 특히 공공경비의 일부를 예술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다) 회원국은 개발의 관점 안에서 예술적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가를 위한 유급 작업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술 활동의 결실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예술단체 및 개별적 예술가들의 위원회, 혹은 지방적, 지역적, 전국적 차원에서 예술 활동 기구를 통한 보조금이나 예술기금의 설립을 통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라) 회원국은 예술가의 창의성, 사명 및 표현과 의사전달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수가 좋은 직책을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1) 전국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교육기관이나 사회 봉사 기관에 관련 있는 부류와 도서관, 미술관, 학회 및 기타 공공기관들의 직책이 예술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외국문학의 번역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에 시인과 작가가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마) 회원국은 예술의 보급을 육성하고 예술가와 대중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필요한 시설들

예컨대 미술관, 연주회장, 극장 및 여타 광장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바) 회원국은 고용정책이나 공공 고용기관의 틀 안에서 예술가의 취업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제도의 설립 가능성과, 본 권고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금 부담 고용기구 협약'(개정 No.96)의 지지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

2. 예술 창작과 문화 발전의 진작을 촉진하고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정책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으며 또한 예술가의 이익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이 요망된다:

(가) 회원국은 예술에 종사하는 여러 활동적인 인구집단을 위해 채택된 제 기준들을 적용하도록 고무하고 또 이를 용이하게 해야 하며 예술가들도 그들과 상응하는 집단에 주어지는 노동조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가들에게도 확대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활동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연주가의 경우 노동시간, 주간휴일 및 유급 휴가(여기에 여행과 연습에 소비된 시간과 공공연주나 출장에 소비된 시간도 참작해야 한다.)

(2) 생명, 건강 및 노동환경의 보호.

(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의 작업의 전제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건축의 유산과 환경의 보존을 보장하고, 예술적 활동을 위한 예술가의 전체의 변경에 관계되는 규정들을 집행할 때는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라)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예술가를 위한 보상의 적절한 형식을 대비해야 하며 행해지는 예술활동의 본질이나 예술가의 고용 지위와 관련되는 이유로 인하여 본 조항 2 (나)(1)에 언급된 문제에 관계되는 기준이 준수될 수 없을 경우엔 예술가와 그를 고용한 자를 대변하는 기구와 협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생산이윤 분담의 형식으로 된 이윤 분배제도가 예술가의 실질소득과 사회보장 자격에 관한 예술가의 제 권리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 예술가들의 제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미성년 예술가를 특별히 고려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제 규정을 참작하도록 요망된다.

4. 고용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되는 바이다:

(가) 회원국은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국제노동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단체 조직과 단체협약의 권리에 관계되는 기준들을 준수하고, 그 협약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준과 일반원리가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아직 그러한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그러한 조직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 회원국은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간에) 모든 그러한 조직체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회원국은 각 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여타 피고용자 집단과 자영단체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피고용 예술가와 자영 예술가들에게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를 요망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부양가족에게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회원국이 적용하거나 향상, 혹은 보충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고용의 간헐적인 성격과 예술가들 간의 격심한 소득 격차가 특히 눈에 띄는 예술 활동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창조하고 출간하고 보급하는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특별한 수단들의 채택 예컨대 공공당국 혹은, 예술가의 용역이나 작품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에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요망된다.

6.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국제 및 국내의 입법은 기술의 전반적인 진보, 매스컴 미디어의 개발, 예술작품과 연주작품을 복제하는 기계적 수단, 공중의 교육, 그리고 문화산업의 결정적인 역할보다 뒤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어디서나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된다:

(가) 회원국은 예술작품의 보급과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 해당 예술가가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불법적인 이용이나 수정 혹은 분배로부터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어야 한다;

(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새로운 의사 전달 수단과 복제 수단의 기술적인 발전 및 문화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편견과도 관계없이 예술가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서커스 및 연예인, 예술가,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을 포함한 연주자의 권리 확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협약과, 또한 케이블 전파와 비디오그램의 도입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1979년 정부간 로마협약 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를 적절하게 참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회원국은 새로운 의사전달 수단의 기술적 개발과 복제수단 및 문화산업의 결과로 예술가들이 당하는 여하한 불이익도 예컨대 그들 작품의 선전이나 보급 및 지위의 창출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라) 회원국은 기술 변환으로 이익을 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한 문화산업과 기계적인 복제산업들이 예술적 창작을 장려, 고무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 예술작품의 선전과 전파, 인세지급, 혹은 예술가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여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 회원국은 예술가와 예술가의 기구가 그들의 고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작업기회에 불리한 결과(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7. (가) 예술가의 소득의 불확실함과 격심한 등락, 예술 활동의 특수한 특징들, 그리고 많은 예술적 직업은 그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회원국은 특정 부류의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권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그 기준은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경력 기간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세제상 예술 작품과 예술 활동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나) 예술가의 건강을 유지하고 특정 부류의 예술가들 예컨대 발레댄서, 댄서, 성악가의 직업 활동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그들에게 충분한 의료 보호를 해 주도록 요망된다. 이

는 작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서 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예술가적 직업에 특유한 건강 문제의 연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 예술작품은 소비재도 투자대상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보급 혹은 최초의 판매 시에는 예술작품과 예술적 연주에 과하는 간접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도록 요망된다. 그리고 이것도 예술가나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작품의 국제적인 교환, 예술가들간의 접촉, 그리고 그러한 접촉을 촉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비추어 회원국을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이 요망된다:

(가) 회원국은 특히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그 중에서도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에 의해 예술작품의 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도와야 한다;

(나) 회원국은 예술가의 국제 여행과 예술가의 교류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문 예술가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II. 문화정책과 참여

회원국은 본 권고 III의 7과 V의 5에 의거하여 예술가의 견해와 그들을 대표하는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견해,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회원국의 문화 정책의 형성과 실행을 세심하게 고려한 유네스코의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여 그들이 토론, 정책 결정과정 및 그에 후속하는 제반 조치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예컨대 예술가의 고용, 활동, 생활조건에 관한 조치들, 예술활동을 위한 관계 당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의 공급, 그리고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위한 제반 조치들;

(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화와 예술의 창달, 예컨대 문화 발전과 관계되는 조치들, 민족과 전통예술가들의 여타 활동을 포함한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효과적인 발표와 관계되는 조치들, 문화적 동질성과 관계되는 조치들, 환경문제와 여가 이용의 여러 국면과 관계되는 조치들, 그리고 교육에서의 문화와 예술의 위치에 관계되는 조치들;

(다) 국제문화협력의 장려, 예컨대 예술작품의 보급과 번역에 관계되는 조치들, 작품과 예술가들의 교류, 그리고 지역적, 국제적 문화 행사의 조직과 관계되는 조치들.

VIII. 본 권고의 활용과 이행

1. 회원국은 본 권고의 목적들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국내 혹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예술가의 지위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 행동을 확대하고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특히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국내 및 국제적 예술가 조직들, 국제노동사무소, 및 세계지적재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2. 회원국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위에 언급된 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저마다 전문적인 협력을 구하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본 권고에 제시된 규정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권고에 기록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X. 기존 이익

어느 특정한 점에서 예술가들이 본 권고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점이 있을 경우 본 권고의 항목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혹은 직접 간접으로 그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부속 문서

가. 세계인권선언

제 22 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 23 조

1. 모든 인간은 노동,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제 25 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밖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

(1)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일할 권리를 인정하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혹은 받아들인 노동에 의해 자기 생계를 유지할 기회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국가들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이 위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여러 조치에는, 기술과 직업 안내, 훈련 프로그램,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 정책과 기술,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해 주는 여건 하에서 충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조

(1)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나)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

(다) 그 자신이 만든 모든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작품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이 위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여러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보급에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한다.

(4)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국제적 계약에 대한 장려와 그 발전, 그리고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인정한다.

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제 3조

국제 문화협력 원칙은 교육, 과학, 문화에 관련된 모든 지적, 창조적 활동을 포괄한다.

제 4조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세계적인 다양한 형태로의 국제 문화협력 원칙의 선언목적은:

1. 지식의 보급, 재능의 촉진 및 문화의 증진;
2. 국민들간의 평화적 관계 및 우호의 발전,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산출;
3. 유엔헌장의 원칙 적용에 대한 기여;
4.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예술, 문화의 향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의 공유, 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가능케 하는 것;
5. 세계 모든 지역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

부 록. 노동자 일반 및 특정 분야의 예술가에 관한 국제규약 문서 및 기타 문건들

가.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관한 권고
유네스코 19차 총회에서 채택 (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
(유엔, 1966년 12월 16일, 뉴욕)

다. 유엔 아동권리 선언 (유엔, 1959년 11월 20일, 뉴욕)

라.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사무소가 채택한 협약과 권고들

1.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문서들:
결사의 자유와 노동 조직권의 보호를 위한 협약(No. 87), 1948;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위한 협약(No. 98), 1949;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협약(No. 111), 1958.

2.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해당 국가들이 자체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 보장에 관한 문서들

사회보장(최저 임금제) 협약 (No. 102), 1952;

임산부 보호 협약(개정), (No. 103), 1952;

평등한 대우(사회보장)를 위한 협약 (No. 118), 1962;

산업재해보험협약 (No. 121), 1964;

병약자, 고령자, 미망인 연금 협약 (No. 128), 1967;

의료보호 및 질병 연금 협약 (No. 130), 1969.

3. 노동자 일반에게, 혹은 특정 분야나 부류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 고용 예술가에게 적용되는 문서들(협약의 비준 당시 국가가 기할 수 있는 제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

(가) 고용과 인적 자원 개발: 고용서비스 협약 (No. 88), 1948; 고용서비스 권고 (No. 83), 1948; 요금부담 고용기구 협약 (개정), (No. 96), 1949; 고용정책 협약 (No. 122), 1964; 고용정책 권고 (No. 122), 1964; 인적 자원 개발 협약 (No. 142), 1975; 인적 자원 개발 권고 (No. 150), 1975.

(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권고 (No. 91), 1951; 자발적 조정과 중재 권고 (No. 92), 1951; 기업 수준에서의 협력 권고 (No. 94), 1952; 산업별 및 전국적 차원의 협의 권고 (No. 113), 1960; 기업 범위 안에서의 의사전달 권고(No. 129), 1967; 고정사항 심사 권고 (No. 130), 1967.

(다) 노동조건: 임금보호 협약 (No. 95), 1949; 균등 수지 협약 (No. 100), 1951; 균등 수지 권고 (No. 90), 1951; 고용 종료 권고 (No. 119), 1963; 작업시간 단축 권고 (No. 116), 1962; 주급휴가 협약 (No. 106), 1957; 개정 유급휴가 협약 (No. 132), 1970; 유급 교육휴가 협약 (No. 140), 1974; 유급 교육휴가 권고 (No. 148), 1974; 청년층(비산업직) 의료검사 협약(No. 78), 1946; 청년층 의료검사 권고(No. 79), 1946; 청년층(비산업직) 야간노동 협약(No. 79), 1946;

청년층(비산업직) 야간노동 권고(No. 80), 1946; 노동 검사 협약(No. 81), 1947; 노동 검사 권고(No. 81), 1947; 노동자 의료보호 권고(No. 97), 1953; 직업적 의료서비스 권고(No. 112), 1959; 위생 협약(No. 120), 1964; 직업암에 관한 협약(No. 139), 1974; 직업암에 관한 권고(No. 147), 1974; 직업환경(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No. 148), 1977; 직업환경(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권고(No. 156), 1977; 최연소 노동 협약(No. 138), 1973.

(라) 이민노동자: 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개정), (No. 97), 1949; 고용을 위한 이민 권고 (No. 80), 1949; 이민노동자 (보충규정) 협약(No. 143), 1975; 이민노동자 권고 (No. 151), 1975.

마.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기구:

연주가,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61).

연주가,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를 위한 시범법 (1974).

연주가,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에 관한 권고 (로마협약의 정부간위원회 제17차 회의, 1979년).

바.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유네스코 1952, 1971년 개정).
문학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재산기구, 1991)

